

(별표 1) (2003. 2. 17, 2003. 9. 9, 2003. 10. 30, 2004. 8. 25, 2006. 2. 9, 2006. 11. 8, 2007. 5. 15 개정)

###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 1 조 (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주)”이라고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계약업무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한수원(주)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또는 공증위임장) 1통
4. 사용인감신고서(해당시) 1통
5.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써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 외국인의 경우 서명 가능)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의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요령 제2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요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령 제35조제1항제6호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요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006. 11. 8 본조 신설]

제 4 조 (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요령 제31조 제1항의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2003. 10. 30 개정)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권유서
2.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2003. 9. 9 개정)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7.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해당시) (2003. 9. 9 개정)

8. 구매시방서(또는 규격서, 이하 같다) 또는 품목명세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한수원(주)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 (관련규정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및 요령 등의 입찰관련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한수원(주)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본조에서는 “입찰보증금”이라 한다) 또는 그 금액의 납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을 약속하는 문서(이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입찰참가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요령 제72조 제6항에 의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003. 2. 17, 2006. 2. 9, 2007. 5. 15 개정)

1. 입찰참가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에 요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07. 5. 15 신설)

2.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한수원(주)의 보증금 귀속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 (2007. 5. 15 신설)

② 입찰자가 입찰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서를 철회·취소한 경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약정된 기간 내에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3. 2. 17, 2006. 2. 9 개정)

③ (2003. 2. 17 삭제)

④ (2003. 2. 17 삭제)

⑤ (2003. 2. 17 삭제)

⑥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로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다음날 이후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2007. 5. 15 신설)

제 7 조 (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참가 승낙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전에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2006. 11. 8 신설)

④ 요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2006. 11. 8 개정)

⑤ 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을 부착한 신분증명서 등을 입찰 시에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2006. 11. 8 개정)

제 8 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④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 ⑥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별도로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 9 조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을 할 때와 입찰공고시 또는 입찰참가권유서에 따로 정한 때에는 가격입찰서를 가격입찰서봉투(“가격입찰서 재중”표시)에 넣어 밀봉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입찰시에는 한수원(주) 소정의 우편입찰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일시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증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한수원(주)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제출된 입찰서 또는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에 의한 가격입찰서는 한수원(주) 계약담당직원에게 의하여 당해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 기재 및 확인 날인되어 개찰시까지 미개봉 상태로 보관된다. (2006. 2. 9 개정)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의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한수원(주)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요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제 10 조 (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 11 조 (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요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도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각각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2003. 2. 17 개정)

제 12 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납부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2003. 2. 17, 2006. 2. 9 개정)
4. 입찰자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경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한수원(주)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정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 제8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제 13 조 (건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건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건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 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건품은 계약이행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건품은 낙찰자 결정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한수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건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한수원(주)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4 조 (입찰의 연기 등) ① 한수원(주)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한수원(주)은 입찰자에 대한 책임없이 사업변경, 가격초과, 협상결렬 기타 다른 사유 등으로 언제든지 이 입찰을 철회할 수 있으며 구매범위·납품일정·입찰조건 등을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한수원(주)은 이러한 철회, 변경 또는 수정과 관련하여 입찰자에게 어떠한 배상책임도 지지 않는다.

③ 제1항의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 철회, 변경, 수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다.

제 15 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한수원(주)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최초의 입찰에 참가신청한 자(요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의 경우는 최초의 입찰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수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4. 8. 25 개정, 2006. 2. 9 개정)

② 한수원(주)은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004. 8. 25 개정)

③ 한수원(주)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하지 아니 한다. (2003. 2. 17, 2004. 8. 25 개정)

④ 한수원(주)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요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7호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당해 발전소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차상위의 행정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고, 제35조제1항제11호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 (2004. 8. 25, 2006. 11. 8 개정)

제 16 조 (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요령 제65조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2004. 8. 25, 2006. 11. 8 개정)

② 요령 제32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수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06. 11. 8 개정)

③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요령 제6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6. 11. 8 신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06. 11. 8 신설)

⑤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요령 제32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요령 제65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단,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의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요령 제6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006. 11. 8 본항 전면개정)

⑥ 제5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한수원(주)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2006. 11. 8 개정)

⑦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요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한수원(주)은 당해 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며, 입찰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다. (2004. 8. 25, 2006. 11. 8 개정)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자는 당해 물품의 품질 등의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006. 11. 8 개정)

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 한수원(주)은 제7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가격과 품질 등을 평가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한다. (2006. 11. 8 개정)

제 17 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한수원(주)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한수원(주)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한수원(주)이 요구하는 계약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을 한수원(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18 조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한수원(주)과 낙찰자가 계약서 또는 주문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약담당자가 주문서를 발급함으로써 확정된다. (2006. 2. 9 개정)

② (2006. 2. 9 삭제)

제 19 조 (2003. 2. 17 삭제)

제 20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요령 제9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요령 제97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다. (2006. 11. 8 개정)

제 21 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및 입찰자는 한수원(주)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2 조 (이의신청)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한수원(주)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1.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의 규정의 국제입찰에 의한 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기타 정부조달협정 규정에 위배된 사항

제 23 조 (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요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수원(주)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2003. 2. 17, 2004. 8. 25 개정)